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610-10

www.mohw.go.kr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기존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조정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3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인(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3인(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1,350,521
	4인(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5인(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6인(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3,782,776
	7인(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반영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소득평가액 (p17~18)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중략)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중략)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방법 (p36~44)	4)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중략) iii.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 방식 준용) ※ 1인 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2년 327천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4)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중략) iii.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 방식 준용) ※ 1인 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3년 330천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제출서류 (p49~51)	② 필수 구비서류 (중략)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② 필수 구비서류 (중략)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종별변경 신청절차 (p55~56)	• 유의사항 (중략) - (공단) 문서접수 후 처리, 최초 결정(책정) 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급하여 적용 일자 변경 처리, 90일 이후 요청시에는 문서 접수일로 처리	• 유의사항 (중략) - (공단) 문서접수 후 처리, 최초 결정(책정) 일로부터 90일 이내 요청 시 최대 90일까지 소급하여 적용일자 변경 처리, 90일 이후 요청시에는 문서 접수일로 처리

CONTENTS

I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 1. 개요 3
- 2. 사업 주요내용 4

II > 대상자 선정기준

- 1. 개요 9
- 2. 소득인정액 기준 10
-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III > 신청 및 선정절차

- 1. 신청, 조사 및 결정 48
-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55
- 3. 확인조사 56
- 4. 이의신청 등 64

IV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V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1. 개요 71
-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VI > 기타 행정사항

- 1. 시·군·구 77
-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 3. 요양기관 78
-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82



CONTENTS

VII > 참고자료

1. 서식	85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85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89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90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91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	92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93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94
[서식 8호] 이의신청서	95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96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100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101
②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원등록 (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103
③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104
④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106
⑤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108
⑥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109
⑦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111
⑧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114
⑨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115
⑩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11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2. 사업 주요내용

I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1

개요

-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 '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현황

(2022.12.31. 기준)

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84,609명	31,333명	156,703명	96,573명

● 관련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2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23년 기준, 2005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5년생은 '23.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24.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 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사업총괄, 업무처리지침 수립, 국고보조 등
	보험급여과	● 보험급여기준 수립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의료비 지원관련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차상위 업무 집행 총괄 ● 대상자 자격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자격조회,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 등
	각 지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 및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	● 심사 및 청구 프로그램 운영 등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서 접수·등록
	통합조사관리팀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공단에 통보
요양기관	담당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 실시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 “안내문 수령(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변동사항 공단 및 관할 시·군·구에 즉시 신고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II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2] 제3호 라목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제1호

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이하 “기준세대”라 함)

- 기준세대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생활수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족단위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 ¹⁾)은 제외한다)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 되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상기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준세대(가구원)”에서 제외하여 처리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②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 알림되므로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자격중지 등 처리 하여야 함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별도가구 인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동일 주소 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기준세대에 포함

-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됨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동일 주소 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2촌 관계((외)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경우, 기준 세대에서 제외
- ☞ ①과 ②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신청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하지 않음

▼ 질의·답변

Q 외국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료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등은 기준세대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 사실 혼인(이혼)을 인정하나요?

A 부부 모두 사실 혼인(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자녀, 이·통·반장 등으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나.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다. 소득평가액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1)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시·군·구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 일용근로자 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절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2)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차상위대상자(기준세대원)의 소득산정시 차상위대상자(기준세대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 기타소득 중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③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⑤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i)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ii)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 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상자(기준세대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대상자(기준세대원)에게 지급 하더라도 일정한 납입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님
- ⑥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⑧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⑨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
- ⑩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①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②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②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 연금 월정금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 1회 수령)



-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²⁾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
- ②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③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월 17만원)

-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②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③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월 20만원 지급)
- ⑤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 ⑥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 되었음에 유의

2) 실제소득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차상위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차상위 선정으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②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천원)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등록장애인인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25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기준세대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 대학생, 학점은 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적용
-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지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8.12.31.이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 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대상자 및 기준세대원 포함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①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 지불금
- ②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 ÷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23년 1학기 해당 월 : '23.3~8월 / 2학기 해당 월 : '23.9~'24.2월(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소득유형별 조사 방법

- 각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자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는 제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소득공제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참전명예수당		○	△	×	×
기초연금		○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실업급여		○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	×
	장해급여	○	×	×	×
	유족급여	○	×	×	×
	상병보상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	×
	진폐유족연금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소득공제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진폐위로금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	×
	장애연금	○	×	×	×
	간호수당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	×
	부양가족수당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피부양보조금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	△
	출산·고령화 수당	○	○	×	×
	교통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특수식이구입비	○	○	×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75%)		×	○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농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	○	×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	×
구직촉진수당		○	×	×	×

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 재산에 포함 시키고, 제1호 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및 제5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차감액 - 일반재산 차감잔액) ×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재산의 범위

구 분	구체적인 범위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건축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을 적용함 - 적용한도액은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이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파악된 금융재산은 반영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차량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구 분	구체적인 범위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 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시군구(읍면동)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및 법원의 최종확인이 있는 명의도용차량, 대포차량은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 ※ 압류차량, 명의도용(대여)차량, 멸실차량, 대포차량 등임을 지자체가 확인하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대여) 차량과 대포차량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됨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대상자, 기준세대원이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기준세대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는 목적이 대상자(기준세대원)의 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예 : 교회에서 교인들에 대한 수송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 기준세대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대상자(기준세대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구 분	구체적인 범위
	- 다만, 동일 기준세대원인 둘 이상의 사람이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의 재산으로 중복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 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 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자동차로 인정 - 단, 대상자 기준세대내의 세대원간의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장애인인 대상자(기준세대원) 등 자동차재산기준 반영 시 유리한 자의 재산으로만 반영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³⁾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대상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③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⁴⁾ 1대 - ③-(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대상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하단 ③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된 경우의 승용자동차 및 아래 (가)~(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 분	구체적인 범위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⁵⁾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3년 76,9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구 분	구체적인 범위
	(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라) 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승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도 포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마)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사)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아)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처분 가능

구 분	구체적인 범위
	-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2. ①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②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③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④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일(또는 기존 대상자의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 보유한도 - 장애인 가구 : 장애인사용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로 총 2대까지 인정함. ①-(가) 또는 ③-(가)에서 1대, ①-(나), ③-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또는 (다)~(자)에서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에서 50%만 반영되는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로 총 2대까지 인정함. ①-(나) 1대, ③-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또는 (다)~(자)에서 1대 ※ 자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한도 적용을 받지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타 복지 사업 신청을 통해 자생보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 (마)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차량 - (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사)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아) 소유자의 요청·동의를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자)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정의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대상자(기준세대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 시까지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구 분	구체적인 범위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 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 처분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경과 개월 수 :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최근 조사일자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구 분	구체적인 범위
	- 차감액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기타산정되는 재산(처분한 재산의 가액평가기준,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확인)의 조사방법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3)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 :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 장애인 본인 및 상이자인 대상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5)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의료비·학비·주거 부채는 전액 공제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부채와 사채는 불인정
- 개인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
 -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불인정
- 부채의 인정범위, 조사방법, 차감순서 등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 기본재산액

- 기준세대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은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득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이 주거용재산 인정기준액(대도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 조사방법 관련,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자료” 확인. 부양의무자 중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확인 불필요

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부양비 산정은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규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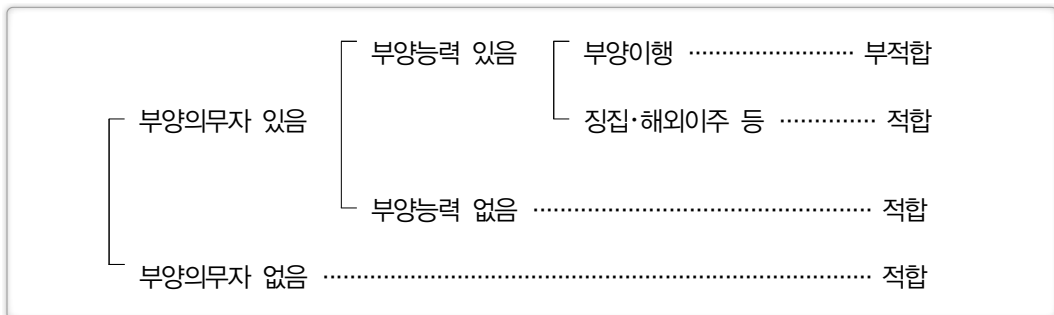
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 조사개요



● 조사순서

1)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중 대상자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등 사실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복무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복역	-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행방불명	-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
사망 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 복명서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 확인 및 조사 실시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확인(소득조사) ... 아래 '마.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방법' 참고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4)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 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 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대상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국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의 대상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재한 여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제공시부터)
- 기타, 조사자가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 조사방법 : 기본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확인(추가자료 제출 생략), 조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마.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방법

1)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직계비속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34세 이하인 경우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 34세 초과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대학생인 경우 포함
-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34세 초과하는 근로능력 있는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 자녀의 자녀(부양의무자의 손자녀)는 34세 이하라도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
- * 대상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동일)

-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는 달리고 있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34세 이하, 34세 초과 근로무능력자·대학생)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해당 가구의 소명 및 증빙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
 - ※ (예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노인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
- * 예를 들어,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소득조사대상에서 제외(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함)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3)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①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②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 i.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기업),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급여 및 수당
- ii.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i.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천원)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ii.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iii.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 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직업훈련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익양소득 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iv. 보육·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수당법」 제4조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5항에 따른 영아수당

v. 지자체 지원 금액

-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 보훈대상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4)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①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i.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

- ①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공제는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지자체의 확인결과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미재학하거나 조기 입학·휴학 등으로 해당 연령대 학교와 다른 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 확인한 달부터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실제 재학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
- ③ 부양의무자 가구원 교육비 표준공제의 주기는 학기제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을 1년으로 함
- ④ 아래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아래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 가구 포함)에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년 표준공제금액	195천원	205천원	231천원

- ii.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 납부영수증으로 제출·확인되는 경우 인정

※ 초·중·고등학생 가구원 교육비 표준 공제와 같이 대학교 교육비 차감 주기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1년으로 하며, 2학기제일 경우 학기당 납부영수증을 제출 받아 인정 가능

- iii.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비용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확인하는 경우 인정(공제 방식은 학비 공제방식 준용)

※ 1인 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23년 330천원) 상한 범위내에서 실비공제

- iv. 의료비 및 간병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가구원에 대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 v.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 등

- 동 지출 비용은 기구 및 용구의 구입 월부터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기간 까지를 총 구매금액에서 나눈 값으로 차감 가능하므로 내구연한이 없는 용구는 차감 불가

※ '18.7월에 내구연한이 2년인 전동 휠체어를 부양의무자가 본인부담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 '18.7월부터 '20.6월까지 2년간 매월 41,667원(100만원/24개월)씩 소득에서 차감

- vi.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요양기관 이용료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②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 i.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ii.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의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 필요
- iii.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 iv.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v. 채무변제액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 vi.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 vii. 압류소득
 -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임
- viii.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월세에 한정함
 -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 다른 주거용 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 ※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를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하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반영
 - 월세 공제액 : 아래의 월세공제 상한액까지 차감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을 차감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8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viii.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 :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어민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농어민가구 특례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지출분을 차감

- 농어민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득반영방법

- 차감·제외가 가능한 3)번 소득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
- 4)번 교육·의료비 및 필수 지출비용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함

※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도 포함

6)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3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인(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3인(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1,350,521
	4인(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5인(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6인(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3,782,776
	7인(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반영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3. 확인조사
4. 이의신청 등

Ⅲ

신청 및 선정절차

[인정관련 절차]

절 차	내 용
신 청 (신청인)	-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전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서류 생략
조 사 (시·군·구)	- 소득인정액,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 조사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신청인의 가구특성 등 실태조사
결정·통지 (공단)	- 시·군·구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정 및 “안내문 발급(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 공단은 결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
경감시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행
확인조사	- 시·군·구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조사 - 공단 : 질환, 연령(18세 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
경감중지	확인조사 결과 경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감 중지



1

신청, 조사 및 결정

가. 신청

1)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불가(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2)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 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3)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4)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호에 따라 세대분리 가능
 - 세대분리는 공단 정관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소급 처리

5) 제출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구분하여야 함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신청시나 확인조사, 종별변경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에서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F29),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경우 반송처리)
 - ※ 지자체(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산정특례 등록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미등록으로 확인되어 신청내역이 반송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여 만성질환자로 재신청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 지자체(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서로 확인요청하였으나, '17.1월부터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행복e음을 통해 연계 시행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방법

- ❶ 신청서 접수(읍·면·동)
- ❷ 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읍·면·동 → 행복e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구원 등록 시 '산정특례여부연계' 선택 후 저장(103쪽 참조)
- ❸ 산정특례등록여부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 행복e음)
 - 연계요청일의 다음날 회신
- ❹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시·군·구)
 - '가구원정보 상세보기' 화면에서 확인 가능(104~105쪽 참조)

▼ 질의·답변

Q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

- A 진단방법은 최종진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하며, 치료내용에는 만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6개월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하고, 성형·미용목적 등의 치료나, 급성기질환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0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장애·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손상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같음
- ※ 정당한 권원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금지

●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및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③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21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 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을 사용

6)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등과 병행 신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권한이 있는 사업(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다만, 행복e음에 금융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병행 신청의 예외로 인정

나. 조사내용 및 절차

1) 조사 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

- 타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로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이미 거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조사 완료 가능

2) 조사 기관 :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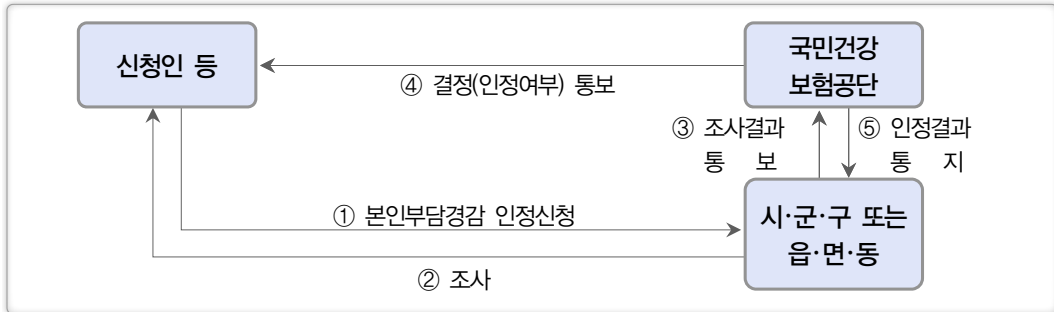
3) 조사내용

- (소득인정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세대의 소득·재산
- (부양요건)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기타요건) 기타 신청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4) 조사절차

① 개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 필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봄
- 시·군·구는 지체 없이 신청세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 및 공부상 자료 확인
 - 다만, 전산자료로는 파악이 곤란한 경우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등이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신청세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행복e음 → 건강보험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조사,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원본은 시·군·구에서 보관(민원접수에 따른 원본 보관)하고 전·출입 시에도 전산처리만 하고 별도 서류 송부는 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사결과 송부 시,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행복e음 시스템에 스캔 등록후 함께 송부하여야 함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송부 없이 산정특례 대상에 체크하여 송부

- 공단은 시·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차상위 종별과(희귀난치성·중증 질환, 만성질환) 진단서의 질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함
- 공단은 행복e음에서 송부한 진단서의 진단방법(최종진단 여부)과 종별에 따른 질환명의 적정여부 등 확인결과,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해당하는 반송사유를 선택입력하여 반송처리함
 - 진단서의 내용과 차상위 지원 종류(희귀난치성·중증질환, 만성질환)가 다른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차상위 종류를 직권 변경처리 후 시·군·구에 변경내용과 결과를 안내하고, 진단서의 진단방법이 다르거나 진단 질환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입력하여 반송처리
-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가 반송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진단서 미비 사항을 보완 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 경감유형별 결정일과 해제일
 - 공단은 행복e음에서 수신한 날을 차상위 결정일로 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급요청여부가 “Y”로 수신된 경우 의료급여 상실일자를 차상위 결정일로 함
 - 공단은 경감유형별로 차상위 해제일을 관리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유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의 1일(예를 들어, 산정특례 해제종료일자가 2023.1.20.인 경우 차상위 해제일은 2023.3.1.임)
 - ※ 예외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자는 9999.12.31.로 관리하고,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제외대상자(특정기호 V000)는 9999.12.31.로 관리하되 완치 또는 진단변경에 따라 산정특례종료일이 확인되는 경우 해제일을 산정특례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의 1일로 변경(다만, 사망자는 사망일의 다음날로 자격중지)
 - 만성질환 :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 중증치매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유효)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의 1일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1월1일.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에서 대상자 사망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지요청을 하는 경우 해제일을 '사망일의 익일'로 전송처리

- 공단은 신청인의 인정여부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할 시, 관할 시·군·구에 즉시 통보(건강보험정보시스템 → 행복e음)하여야 함

②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지원 불가 결정
 - 시·군·구는 거부·방해·기피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공문으로 통보
 - 관할 공단지사는 동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는 지원불가 결정을 통보 하고, 시·군·구에는 동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

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정방법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
- 결정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적용시기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감인정 결정을 한 날” 부터 적용

라.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 신청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등
- 변경내용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 만성질환자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변경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본인부담경감 변경 적용 시기
 - 공단에 변경신청서(서식4호)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 시작일)로 소급하여 인정
- 변경신청 절차 및 내용
 -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
 - ※ 증빙서류(진단서 등)는 공단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생략
 -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사실관계 확인 후 변경 적용
- 직권 종별변경 처리
 - 종별 변경은 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별 변경처리 가능함
 - 직권으로 종별변경 처리를 하는 경우, 종별변경 처리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시작일)로 소급처리 가능
 - 직권으로 종별변경 처리를 하는 경우, 종별변경 안내문 발송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종별변경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 환급
 - 종별변경으로 본인부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공단에서 환급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시·군·구의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처리 방안
 -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통합조사표(자체조사결과) 등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 (공단)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격 상실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출)하는 경우 소급하여 경감 적용 가능
 - ※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책정 전송 시 소급요청 여부를 선택(Y)하여 전송
- 시·군·구에서 행복e음 전송 오류 등의 사유로 결정(책정)된 날짜 변경 처리방안
 - (시·군·구) 공단으로 문서 발송 (날짜 변경 요청)
 - (공단) 문서접수 후 처리, 최초 결정(책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요청 시 최대 90일까지 소급하여 적용일자 변경 처리, 90일 이후 요청시에는 문서 접수일로 처리
 - 소급하여 차상위 취득되어 본인부담 차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비용을 공단에서 환급

3

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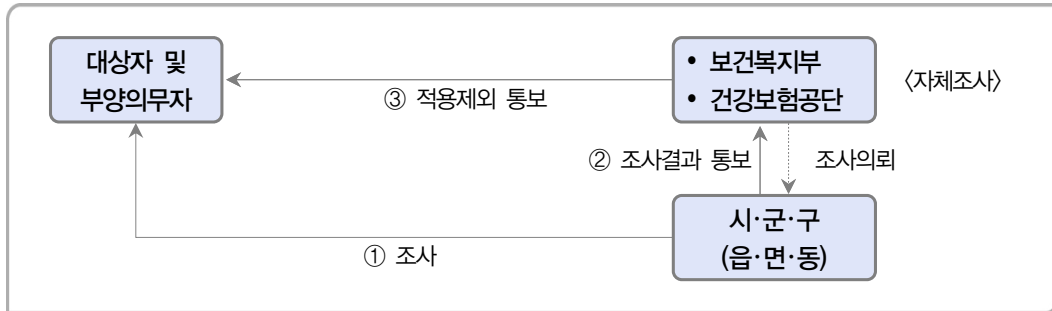
가. 개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등 소득 및 부양기준 부합여부 및 질환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

나.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시·군·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확인조사 흐름도



- 전산상 조사를 원칙으로 함
- 필요 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요구
- 소득·재산의 현저한 변경으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체 조사하여 공단에 통지함
 - 다만,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조사 의뢰 가능
- 조사결과(시·군·구 → 공단) 통보
 - 시·군·구는 조사결과 및 적용제외 결과를 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질환 등 적합여부 조사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의 질환 적합여부 조사 및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 확인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확인조사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 기간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
- 공단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차상위 해제일의 전전월 10일까지 산정특례 만료 예정자에게 산정특례 재등록 등을 사전안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차상위 해제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연장)하여야 함
- 공단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자격종료일까지 산정특례 재등록(연장)을 하지 않은 대상자 중 차상위 자격종료일 직전 6개월 동안 공단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만성질환 등 13개 상병코드로 월을 달리해서 2회 이상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18세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인 자’로 직권종별변경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차상위 자격을 중지함
 - 직권종별변경 후 종별변경 안내문 발송
- 다만, 결핵진료비 본인부담제외대상자(특정기호 V000, 사망자 제외)는 산정특례 재등록안내없이(산정특례종료사유가 사망, 완치, 진단변경이므로) 직권종별변경 또는 자격중지

2) 만성질환자 확인조사

-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는 산정특례등록기간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 공단은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 ex) 만성질환자의 차상위 자격 유효기간이 2023.4.1.~2023.9.30.인 경우 2023.8.10.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확인조사 안내문 사전 통보하고,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2023.9.30.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 D38
●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 당뇨병	E10 - E14
● 정신장애,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 고혈압	I10 - I15
●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 뇌혈관질환	I60 - I69
●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 관절염	M00 - M14
● 두개내손상	S06

3)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확인

- 연 1회 확인하여 만 18세가 도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자격을 인정함.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라. 확인조사 후 본인부담경감 적용(인정) 시기

1) 소득·재산 확인조사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조사 결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공단에 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공단이 적용제외 결정을 한 날부터 자격을 상실시킴

*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음

2)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질환 확인조사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자격종료일까지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자격을 계속 인정하나, 재등록 기간 이후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일부터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함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 이내 만성질환 종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만성질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자를 결정 일자로 종별변경이 가능함
- 단,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정특례 재등록 기한 또는 진단서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중지일로 소급하여 자격 인정
-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단에 진단서 제출 또는 산정특례 재등록으로 차상위 자격을 연장 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규 신청하여야 함

마. 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확인대상

- 대상자의 자격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생활실태
 -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부양능력 유무 등

● 확인방법

- 일반적인 확인 : 대상자의 신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대상자(기준세대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상담·가정방문을 통한 확인 : 대상자의 거주여부,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 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근로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 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연금소득 금융조회시)
	이전소득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 시
재산	일반재산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 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매년 2회 변동사항 발생 시
인적 사항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 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 시
	군 입대, 군 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 시
	해외출입국	매월 변동사항 발생 시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 변동사항 발생 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 시
	부양 거부·기피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동반 출입국 내역	매일 변동사항 발생 시
	부양 거부·기피 인정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	수시(실시간) 및 년 1회
	부양의무자의 수급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	년 1회

* 사망일자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일자로 공적자료 제공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시기는 세부 사항은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조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대상자(기준세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가구원 일부	알림	① 기준세대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기준세대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알림	해당자 자격중지 요청 등
가구원 변동	출생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등
	사망	알림	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중지 요청 ② 잔여가구원에 대한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이혼	×	기준세대를 분리하고 현 기준세대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기준세대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자격중지 요청 또는 기준 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입대	알림	① 대상자가 군입대자인 경우 자격중지 요청 ② 기준세대원이 군입대자인 경우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입소	알림	①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자격중지 요청 ② 기준세대원이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퇴소	알림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가출	×	① 대상자가 가출한 경우 자격중지 요청 ② 기준세대원이 가출한 경우 기준세대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사망의심자	알림	해당자 사망 확인 및 자격중지 요청 등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공적자료 외 신고 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변동	출생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 입대, 군 제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 변동	소득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바. 기타 행정사항

-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적용제외 결정을 하고,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 단, 제외 결정이 있는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기존 기준 적용
- 관할 공단지사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하여 송부
- 대상자 자격정보 주기적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대상자 자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대조하여 자격 사항 확인·관리

4

이의신청 등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여부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관할 공단지사는 신청조사 후 지원불가 결정 등 불이익 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90일 이내 관할 공단지사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
 -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의뢰
 - 시·군·구는 재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본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서” (서식5호)를 공단지사에 제출 시 상설처리 가능함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IV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가. 적용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

나. 기준초과 판정 시점

-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시점이며, 그 다음 달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특례 수급가구로 선정

다. 특례적용기간

- 구직촉진수당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월부터 수급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
 - *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 여부 결정
 - ** 구직촉진수당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외의 다른 소득인정액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례적용 중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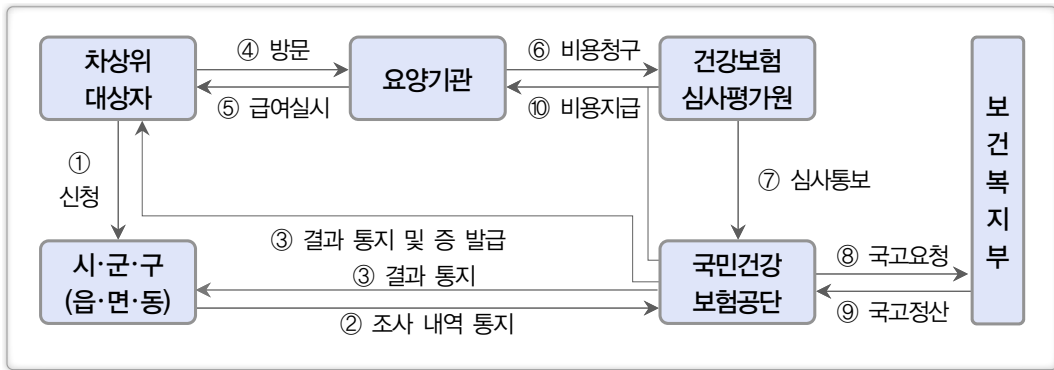
1. 개요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V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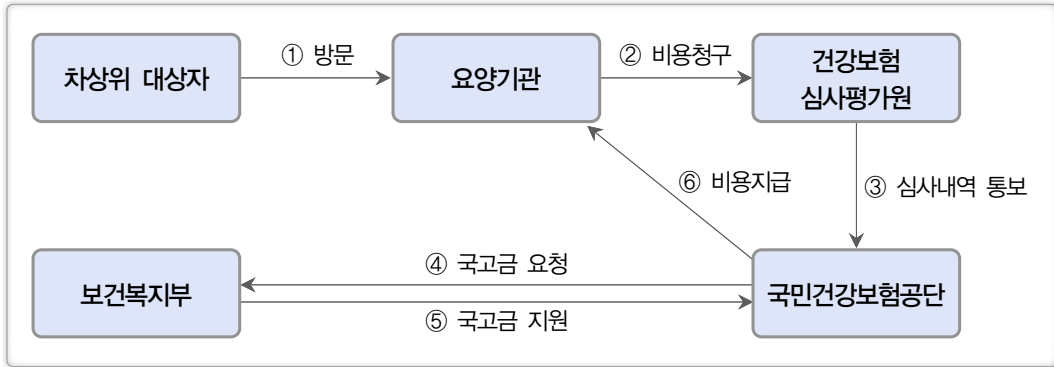


- ① (대상자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인정을 해당 시·군·구에 신청
- ② (조사 및 통지) 시·군·구는 신청내용을 공부 상 자료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 ③ (결정 및 통지) 시·군·구의 조사를 토대로 대상자 결정 후, 해당 사실 통보
- ④~⑤ (요양급여 요청 및 실시) 차상위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여 요양급여(진료, 치료 등) 실시
- ⑥ (비용청구)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와 “법정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
- ⑦ (비용심사 및 통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결과를 공단에 통보
- ⑧ (비용내역 결정 및 국고요청) 공단은 본인부담차액분과 공단 부담금액을 구분 정리후
보건복지부에 국고 요청
- ⑨ (국고지원 및 정산)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차액분에 대하여 공단에 국고지원하면 공단은
사후 정산하여 잔액 등을 반납
- ⑩ (비용지급 등)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분에 대하여 비용 지급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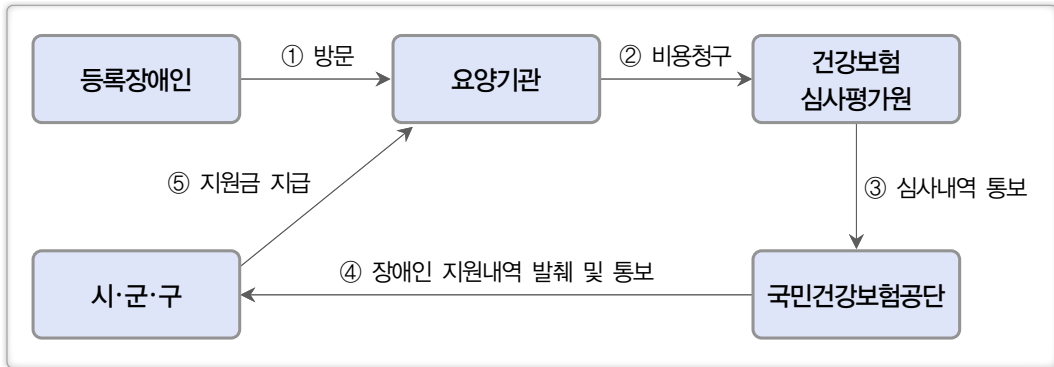


- ① (요양급여 실시 및 청구)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요청에 따라 진료·처치 등 요양 급여를 실시하고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
- ② (비용청구 내역 심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청한 비용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③ (비용심사 내역 결정) 공단은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비용심사내역을 토대로 차상위 건보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의 건강보험부담분에 대하여 “공단부담분”과 “본인부담 차액분”으로 구분하여 지급금액 결정
 - 공단부담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분 및 본인부담차액분”을 제외한 급여 비용
 - 본인부담보전(차액)분 : 요양급여비용 중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 경감(예시 : 입원 20% → 14%)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차액(예시 : 입원 6%)
- ④ (국고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여 공단에 국고 지원
- ⑤ (국고금 정산) 공단은 지원받은 국고금에 대하여 실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 공단은 당해 연도 결산기준으로 익년도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정산결과 보고
- ⑥ (요양급여비용 지급)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가. 개요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종전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종전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이 2차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 14% 전액,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를 한 경우 본인부담액 750원 별도 지원하는 사업

나. 주요내용 및 절차

- (비용청구)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비용심사)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공단에 내역 통보
- (비용결정)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차액, 본인(일부)부담금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구분하여 정리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분을 시·군·구에 통보
- (지원금 지급) 시·군·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분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비용 지급 조치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요양기관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VI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 신규 및 확인조사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
 -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건강보험증의 “생년월일(관리번호)”란의 생년월일 좌측에 “구분자코드” 표기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C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E
 - * 장애등록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단,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자격조회시스템에서 장애등록 여부가 “Y”인 자는 구분자코드 “F”로 청구)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C”, “E”로 표기된 “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조회 및 자격관리시스템” 운영
 -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에 실시간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격조회 프로그램 운영 등
 - 대상자를 선정, 조사, 사후 관리(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정산 등)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자격 등 사전 점검 후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거 요양기관에 지급
 - 요양급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차액분, 장애인의료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 관리 및 결정 필요

3

요양기관

가. 자격확인

-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및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자격 확인
 - 건강보험증의 가입자 “생년월일(관리번호)”란의 생년월일 좌측에 “C”, “E” 표기 확인
 - 자격조회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대상자 여부 및 장애등록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 장애등록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단,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장애등록 여부가 “Y”인 자는 구분자코드 “F”로 청구)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구분
 - 건강보험(보험자구분 ‘4’) 명세서에 진료형태(입원, 외래)별로 각각 구분하여 일반 “건강보험 진료분”과 함께 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 기재
- 구분코드
 - ‘C’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E’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F’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을 합하여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1항(진찰료) ~ S항(특수장비)까지 급여비용 합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표 2]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 * 가산식대 비용 전액을 청구액에 포함
- 장애인의료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기재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각종 진료수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적용)은 건강보험 적용방법에 의함

다. 기타사항 등

- 요양급여 전산프로그램 철저한 사전 점검 등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C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구 분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E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18세 미만자)				
☞ 외래				
구 분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기본(E)		1,500원	1,000원
	장애인(F)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임신부·조산아 5%)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V277, V278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임신부·조산아 5%)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관련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E)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5%(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10%(희귀환자)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 그밖의 외래진료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진료자·중증·희귀질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만성)·5%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10%(희귀)	
상급 종합병원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 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 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입원				
구 분			본인부담금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16~18세 아동 치아홈 메우기·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기본식대 20% (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장애인(F)	본인부담금		기본식대 2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16~18세 아동 치아홈 메우기·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산모, 제왕절개분만, 6세 미만 아동, 결핵, 장기등 적출, V191, V192, V268, V275			기본식대 20%	
☞ 기타				
구 분			본인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직접조제		900원	
	처방조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내원 후 조제	3%(단, 급여비용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이외의 경우	500원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없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함
-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원료에 한하여 5%
-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 1세 미만 영유아(E, F) 외래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하며(단,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1,000원 또는 1,500원 정액 부담 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2) 표 비교2.에 따라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100분의 5를 부담함

[65세 이상 노인 틀니 환자의 본인부담기준]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65세 이상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5/100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15/100	
	F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15/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6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 환자의 본인부담기준]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65세 이상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10/100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20/100	
	F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20/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추나요법 환자의 본인부담기준]

구분	구분	본인부담액	비고
추나요법	C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30/100	
	E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40/100	
	F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 x 40/100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안함

※ 추나요법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대상자 발급 신청
 - 신청 : 읍·면·동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담당자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확인, 증명서 출력·발급
-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절차
 - 행복e음시스템에 신청내역 입력·저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신청내역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증명서 자동발급 후 행복e음시스템으로 전송
 - 읍·면·동 담당자가 증명서 출력하여 교부
-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_www.nhis.or.kr), 모바일(The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나. 증명서 발급 기준

구 분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비 고
본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복사 생략
법정대리인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확인	신분증 복사 생략
그 외 대리인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확인, 위임장	

※ 전산망을 활용해 가족관계 등 확인

참고자료

1. 서식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1

서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전화번호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 양 의 무 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 여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⁹⁾ [] 기타 ¹⁰⁾) [] 교육급여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¹⁾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상황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VII. 참고자료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7.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정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료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기타(타법의료 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 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토 지	원	원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 기타가축(마리,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종묘(원)	회원권	원						
□ 기계·기구류(원)		원								
□ 기타(원)		원								
소계 (A-(B+C+D))		원								
부 채	금응기관 대출금		원	금응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할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권)자 성명		부양의무자 성명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부양의무자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²⁾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임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원) □ 기타(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 소(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구류(원) □ 기타(원)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원) (원)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 채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³⁾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및 간병비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대학생 학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부양의무자 본인 주거용 월세 (원) □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증번호)		
	주 소			관 계	
				연락처	
변 경 신 청 내 용	현행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			
	변경 신청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			
첨부서류	1. 진단서 2. 대리 신청 시 본인과 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신분증 사본				
상기와 같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

9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발급번호	
차 상 위 경 감 대 상 자 확 인 내 역 서				
연번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경감유형	
1				
2				
3				
4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위임장				
①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발급)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피위임자(위임받아 오시는 분)께서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단 및 읍·면·동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식 8호]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①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처분의 내용	(처분지사 :)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	-----------	-----------------

③ 처분이 있는 (도달한) 날	년 월 일
---------------------	-------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	-----------------

⑤ 처분지사의 고지 유무	고지 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전자우편주소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 E(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F(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자료입니다.

1 외래 본인부담 산정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원급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 제제)를 '직접조제'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 횟수 기재
2	의원급 외래에서 '그 밖의 외래진료'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기재하지 않음 ※ 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없이 처방전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발급이 없는 경우
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의약품 또는 한약(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으로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 기재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특정기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특정 기호와 구분 필요함
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외래에서 '그 밖의 외래진료'한 경우 청구방법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으로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는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에 해당 특정기호 기재
5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여부	● 의원급 외래 : 기재안함 ● 병원급 및 종합병원 외래 - 특정기호 'V001' 기재 필요 (정액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 상급종합병원 : 기재안함
6	의원급 외래에서 1일 내원 하에 동일 상병으로 2개과 진료 후 각각 직접조제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진찰료 1회 산정한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3,000원으로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0에 직접조제횟수를 2회로 기재함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40에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2회로 기재함

연번	질 의	답 변
7	의원급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단수 절사 방법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함
8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율 성인의 70% 적용여부	● 적용안함
9	의약분업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 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 시 약기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 30% 적용여부	● 적용안함

2 입원 본인부담 산정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산정방법	● 가산식대 - 가산식대전액을 청구함(본인부담액 없음) ● 기본식대 - 기본식대총액의 20% 본인 부담 ● 특수장비총액(CT, MRI, PET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총액(식대 제외)의 14% 본인부담 (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2	정신과 낮 병동 청구방법	● 입원 명세서에 청구하며 정신과 입원진료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율 10%임 - 특정기호 'F007'을 함께 기재
3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입원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 여부	● 특정기호 'F005' 기재
4	6세 미만 아동(신생아 제외)입원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 여부	● 특정기호 'F004' 기재
5	자연분만 입원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 여부	● 특정기호 'F001' 기재



③ 특정내역구분코드 기재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MT020(원내직접조제·투약횟수) 청구방법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 내원하여 원외 처방 없이 원내주사만 1회 투여한 경우	● 의원급 외래 - 본인일부부담금 : 1,500원 산정 - 직접조제횟수 1회 기재 ※ 기재대상 : 외래진료시 의약품 또는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조제한 경우 ● 병원급 및 종합병원 외래 - 본인일부부담금 : 1,500원 산정 - 직접조제횟수 1회 기재 - 특정기호 'V001' 함께 기재필요 ※ 기재대상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시 의약품 또는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 : 기재안함
2	MT040(진찰횟수) 청구방법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 내원하여 일반외과에서 골절로 진찰만 하고 동일 상병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원외 처방 없이 원내주사 1회 투여한 경우	● 의원급 외래 - 진찰료 : 1회 산정 - 본인일부부담금 : 2,500원 산정 - 직접조제횟수 1회 기재 -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2회 기재 ※ 기재대상 : 외래진료 시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 병원급 및 종합병원 외래 - 진찰료 : 1회 산정 - 본인일부부담금 : 2,500원 산정 - 직접조제횟수 1회 기재 -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2회 기재 - 특정기호 'V001' 기재 ※ 기재대상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외래진료 시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 : 기재안함

4 장애인의료비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장애인의료비 지원 내용	● 의원급 외래 - 본인부담액 중 750원 지원(본인부담액 불문) - CT, MRI, PET 본인부담액 : 지원안함 ● 의원급 입원,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단, 식대 제외) - 기본식대는 20%는 본인 부담 ● 약국 : 지원안함
2	장애인의료비 청구방법	● 공상 등 구분 : F 기재 ● “장애인의료비란”에 해당금액을 기재
3	장애인의료비 청구 시에 보장 기관기호 기재 여부	● 장애인의료비의 보장기관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 표기 없이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확인하여 보장기관에 통보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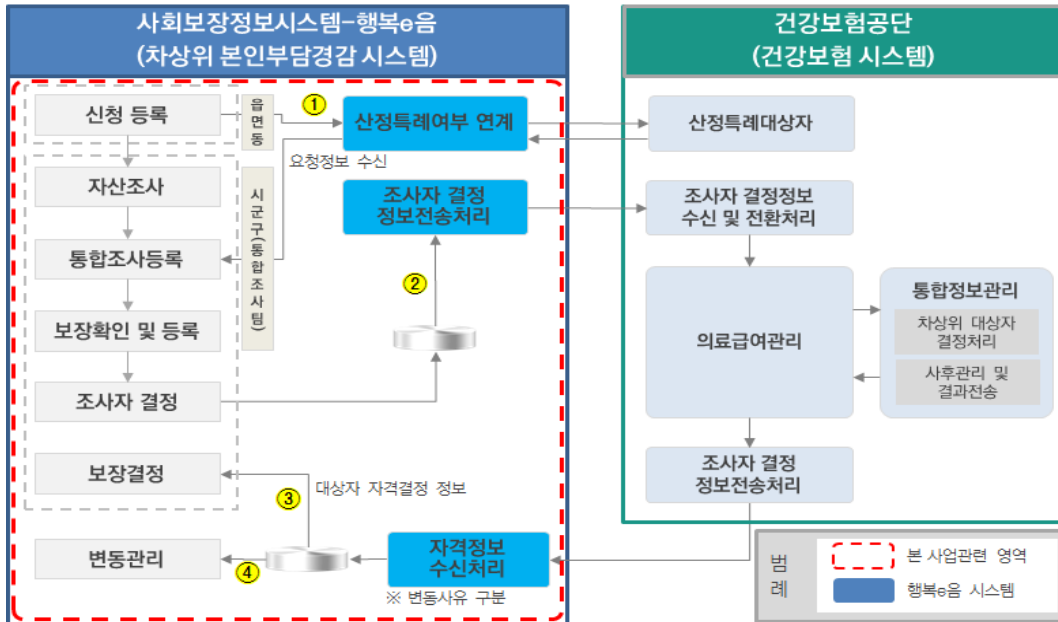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연계 업무안내

- ❶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 ❷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원등록(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 ❸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 ❹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 ❺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 ❻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 ❼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 ❽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 ❾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 ❿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그림 1】 책정(중지) 처리 절차



❖ 책정(중지) 처리 절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 조사 → 조사자 결정 → (연계) → 건강보험공단의 결정 → 보장결정 완료

1 산정특례여부 연계 요청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신청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산정특례여부 연계 요청함

2 책정(중지) 요청

- 조사자 결정이 완료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보장결정요청 후 공단에 책정 요청 정보를 송신함

3 대상자 자격 결정(책정/중지 확정)

- 행복e음에서 결정요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공단에서 최종확정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수신 받으며,
- 수신과 즉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보장의 책정(중지) 처리가 완료됨



④ 변동정보 송신

- 공단으로부터 수신된 변동대상자(중지, 책정)를 송신하며,
- 송신정보는 변동알림(차상위 본인부담(재책정, 중지))으로 제공이 되며 변동알림 유형에 따른 재책정과 중지처리를 수행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시 주의사항

1. 산정특례여부 연계

- 회귀난치성·중증질환자 신청시 건강보험시스템으로 산정특례여부 확인
 - 신청시 건강보험시스템으로 산정특례여부 연계 요청
 - 조사·결정시 건강보험시스템에서 수신된 산정특례여부 수신정보 확인 후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적합' 처리

2. 연계정보 처리결과 확인

- 행복e음에서 당일 17시까지 전송 요청한 대상자에 한해 당일 저녁 또는 익일 처리결과(보장 결정 정보) 확인 가능
 - 17시 이후 전송 요청분에 한해서는 2일 후 처리결과(보장결정 정보) 확인 가능

3. 날짜변경

- 책정된 대상자의 날짜 변경은 공단에 공문시행으로 요청하며, 행복e음의 복지광장에서는 처리 불가능함

4. 자격변동처리

- 공단에서 자격변동 발생시 행복e음에 수신되어 자격변동처리 하고 있으며, 행복e음에서 책정(중지)요청하여 공단에 전송하면 기 책정(기 중지)된 대상자의 경우 건보 공단의 기 책정(기 중지)정보가 화신되어 행복e음에 반영됨

5. 제외요청 전송

- 행복e음상 제외요청 전송건은 자격중지의 의미가 아닌 부적합 판정을 위한 연계정보로만 활용하여야 함
- 건보지사에서 제외요청건을 임의로 반송하면 안됨. 시·군·구가 요청한 경우 반송처리 가능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가구원의 질환구분을 선택하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인 경우 산정특례여부연계 요청이 필수

□ 상담·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 가구원등록

가구원정보등록

행추가 행삭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초기상담가구 장애정보보기

No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미동거사유)	학력	학교명	학년	반	직업	건강상태	전화번호
1	본인			Y 선택					선택	선택	
2	배우자			Y 선택					선택	선택	

+ 색은 현재 통합조사표가 있는 복지대상자입니다. + 색은 주택조사정보가 존재하는 가구원입니다.
+ 색은 현재 취득중인 보장(자격)이 있는 복지대상자입니다.

2 기본정보등록 (☒ 내국인 ☐ 외국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자) ☐ 신청인의 주소/전화번호/핸드폰 번호와 같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복지대상자 ☒ Yes ☐ No 관리행정동 이매1동

세대주와
관계
(가구주)

본인 가구구성사유 주민세대 출생순위 주민구분 관내자
직업 직장명 부서명 고용형태 비경제활동인구
동거 ☒ Yes ☐ No 미동거사유 입소사실
건강상태 질병종류 의사능력여부 ☐ 있음 ☐ 없음
장애등급 장애유형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Yes ☐ No 거주지
보호개시일자

혼인신고일자 ※ 기초연금,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혼인신고일자를 입력합니다.

장애등급심사
면제 ☐ Yes ☐ No 장애등급심사
면제사유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일 경우 Yes를 선택합니다. 타법의료급여
수권자 ☐ Yes ☐ No
임신 ☐ Yes ☐ No 공익요청 동 ☐ Yes ☐ No 국가유공자 ☐ Yes ☐ No 상이등급 선택

3 학력정보 ※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교육급여 학비대상인 경우 실시간학적정보연계를 통해 학력정보를 등록합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 ☐ 실시간학적정보연계

학력 학교명 학교구분 학교급지
공립/사립 학년/반 학업진행상태 시도교육청
학교과정 계열명 학과명 학비대상 ☐ Yes ☐ No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신청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버튼을 클릭 해 주십시오.

산정특례여부 ☒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건강보험공단으로 산정특례대상자여부 확인을 위해 연계요청합니다.) 연계요청일자

학적정보수정 저장 닫기

❖ 업무처리순서 : 통합신청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비스 선택 ⇨ 가구원등록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에 의한 신청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요청

- 행복e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산정특례여부 연계 요청 진행(수신까지 1일 소요)



③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상병코드 및 진단서제출여부 등 가구원정보의 상세보기를 통해서 정보 등록이 필요함

□ 조사·결정 > 가구원정보 > 상세보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영록+응)

로그아웃 | 민원함 | 변동처리현황(0) | 복지원장 · My메뉴 · 새창 · 운영관리

복지대상자 | 통계 | 상담 신청 | **조사 결정** | 급여 | 변동 사유 | 국토부 업무지원 | 자료정비 | 보육 |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통합조사 및 결정 | 사업구분 | 검색 | 도움말 | 관련업무조회

관리행정동: 전체 | 성명: 내국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조회

주소: | 휴대전화: |

기초생활보장군 | 바로가기

기본정보 | 초기화 | 변동내역조회 | 저장

조사구분: 변경신청조사 | 조사등록일자/사유: | 조사진행상태: |

세대구성: 모자세대 | 다문화가정: | 가구구성: 자녀동거가구 | 근로능력자있음: | 수급자유형: |

특례구분: | 비교사항: | 상세보기

가구원정보 | 부양의무자 | 근로능력판정 | 주택조사 | 구비서류 | 특례 및 감면 | 급여계좌정보 | 보장정보 | **가구구성원변경**

상세보기는 현재 진단내역에 등록된 종합장애유형과 등급이므로 상세보기의 장애등급과 상이할 수 있음.
+ 사망자는 색, 관외자는 색으로 표시됩니다. ↓

개인별급여지급내역 | 자활진행상태확인 | **가족사항**

No	가구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연락처	의료급여 종류	장애유형 / 종합장애등급	부장애유형 / 부장애등급	학비지원 대상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 판정사유	질환명	부양의무자 유무
1													
2													
3													

조사표진행현황 | **수급자격진행현황** | **조사가구구성결과** | +보장을 선택하시면 해당보장의 소득재산정보가 표시됩니다. | 소득재산상세조회 | 조사자결정 | 보장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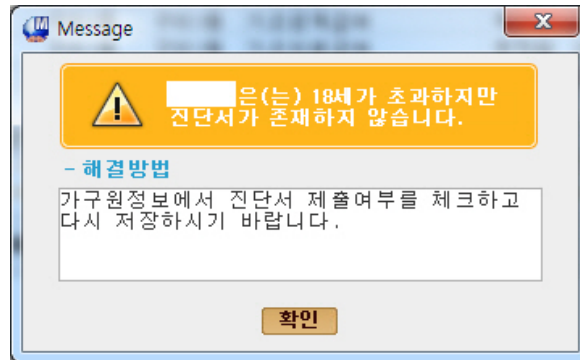
보장구분	가구원수 (보장가구수)	소득 인정액	소득구분	현재금액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진행상태	조사자결정 요청자	보장결정 요청자
	0		소득인정액							
	0		소득평가액							
	0		- 근로소득							
	0		- 사업소득							
	0		- 재산소득							
	0		기타소득							

통합상담관리 | 원스CREEN | SMS전송 | 직권등록완료 | 직권등록 | 조사변경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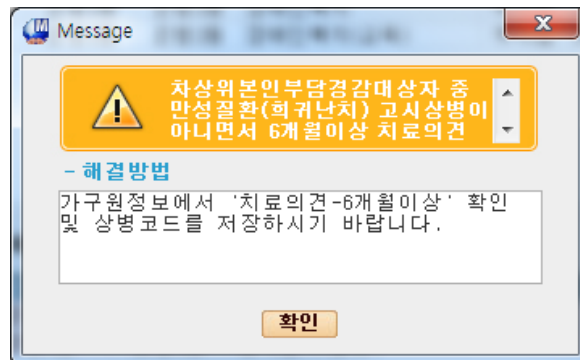
❖ 업무처리순서 : 조사 및 결정 ⇨ 가구원정보 탭의 가족사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 사전조건

-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18세 이상 초과자의 경우 진단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합조사표상의 “가구원정보” > “상세보기” > “상병코드 및 치료의견 입력”에서 진단서 제출여부 또는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희귀난치성 질환정보 등록확인)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상병정보가 등록되어야 하며 통합조사표상의 “가구원정보” > “상세보기” > “상병코드”에서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상병코드를 등록함





4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질환구분, 상병코드 및 진단서 정보를 등록하고 치료의견 입력

□ 조사·결정 > 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가구원정보 > 가족사항

가족사항

행추가 행삭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정보보기 최신정보반영

No	가구주와 관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연락처	의료급여 유형	장애등급	질병종류	학비 대상	초중고 대상	부양의무자 유무
1	가구주	내국인			☒								
2	배우자	내국인			☒								

색은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기본정보 ☐ Yes ☒ No **직업훈련** ☐ Yes ☒ No **면제사유** ☐ 선택 **장애유형** **지체(하지관절)**

임신 ☐ Yes ☒ No **사회복무 등** ☐ Yes ☒ No **국가유공자** ☐ Yes ☒ No **상이등급**

비고사항

학력정보 ※ 학비대상이 Yes인 경우 반드시 교육급여로 실시한 학적정보 연계가 필수입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 **실시간학적정보연계** **학력이력정보**

학력 학교명 학년 반 재학구분

학교 구분 학비대상 ☐ Yes ☒ No **초중고대상** ☐ Yes ☒ No

시도교육청 학교과정 계열명 학과명

취업상태

취업상태 직종 직장전화 직장명

상병코드 및 치료의견 입력 ※ (의료급여→차상위 자격변동 대상자) 의료급여 상실처리 3일 경과후에 연계 요청하여야 정상조회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① 질환구분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 질환구분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② 산정특례여부 ☐ 산정특례

상병코드 ③ 진단서제출 ☒ 진단서제출 ④ 치료의견 ☐ 치료의견 - 6개월 이상

⑤ 차상위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정보 + 산정특례대상자 연계 요청에 대해 수신은 약 1일정도 소요됩니다.

연계 요청일자 2017-12-26 연계 수신일자 2017-12-27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대상자여부 Y

저장 닫기

❖ 업무처리순서

질환구분 → 상병코드등록 → 진단서제출 또는 산정특례 확인 → 치료의견 - 6개월 이상 → 차상위 산정특례여부 연계정보 확인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산정특례여부연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시스템으로 산정특례여부 연계처리함(재요청 가능)

❖ 처리방법

(1) 가구원 정보 변경

① 질환구분 및 상병코드

- 질환구분을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중 선택하고 진단서에 기입되거나, 산정특례 등록된 상병코드에 대해서 등록함

② 산정특례 여부

-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를 산정특례대상자여부를 확인하고,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만 ☒ 산정특례 체크 됨

③ 진단서제출

-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등록한 경우 체크함

④ 치료의견

- 만성질환의 경우 진단서상의 치료의견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체크함

⑤ 산정특례여부연계 요청

- 건강보험시스템으로 산정특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계 요청함
※ 재요청기능 : 요청건에 대해 수신이 완료 된 경우에 한해 재요청 가능

⑥ 차상위 산정특례대상자 연계정보

- 연계요청일자 : 건강보험공단으로 산정특례여부연계 요청일자
- 연계수신일자 : 건강보험시스템에서 요청정보 수신일자
- 산정특례대상자여부 : Y-대상자, N-비대상자
※ 건강보험시스템 산정특례대상자여부가 “Y”인 경우만 산정특례로 등록



5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진단서상 또는 산정특례 등록된 상병코드를 등록함

□ 조사·결정 > 가구원정보 > 상세보기

상병코드 및 치료의견 입력

② 검색조건

코드 상병

③ 상병코드목록

코드	상병
A183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A81	중추 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 감염
B20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B21	악성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B22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B23	기타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B24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B25	거대세포바이러스
B45	크립토콕쿠스증
C00	입술의 악성신생물

④ 저장대상목록(최대 10개)

코드	상병
C001	
C002	
C003	

③ 저장

❖ 업무처리순서 : 진단서확인 또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 ⇨ 상병코드등록

❖ 처리방법

(1) 가구원 정보 변경

① 상병코드목록

- 상병코드목록상에 존재하는 코드를 선택하거나 검색하며,

② 이동버튼

- 등록 :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대상목록”으로 이동시킴
- 제외 : “저장대상목록”에서 “상병코드목록”으로 이동시킴

③ 저장

- 상병코드 등록을 최종 완료함

⑥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보장확인 > 보장등록(자격확인, 서비스확인) 후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로 적합한 대상자의 책정요청처리함

□ 조사·결정 > 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조사자결정

❖ 업무처리순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요청 ⇨ 저장 ⇨ (연계)전송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전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책정요청된 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처리함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처리방법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책정(중지, 제외)요청

① 책정요청

- 요청사항에 “책정요청”을 선택하며,

② 저장

- 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최종 책정요청을 완료함

③ 전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공단으로 전송처리함
 - ※ 주의 : “전송”을 통해서 공단으로 전송한 조사표는 요청취소가 불가능하며 공단의 최종 결정 처리 완료 이후 직권등록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함

④ 진단서 선택

- 구비서류의 기타서류-기타증명서에 등록된 진단서 중 해당하는 진단서를 선택함

※ 질환구분에 따른 처리방법 (화면)

⑤ 상병코드 및 치료의견 입력

질환구분 만성질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 질환구분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상병코드 ----- 진단서제출 ☒ 진단서제출 산정특례여부 ☐ 산정특례 치료의견 ☒ 치료의견 - 6개월이상

질환구분	산정특례여부	진단서제출	상병코드	구비서류	비 고
희귀난치성·중증질환	○	×	×	×	산정특례대상자
	×	○	B20~B24	×	면역결핍
만성질환	×	○	○	○	
	×	×	F20~F29 중증치매	×	정신질환자 중증치매환자
18세미만	×	×	×	×	

⑤ 소급요청 여부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중지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연계 보장 의뢰시 소급요청 여부 Y로 설정

⑥ 산정특례여부 연계 송수신 정보

- 산정특례여부 연계 송수신 정보를 이력형태로 조회

7]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며 조사자 결정의 “전송”을 통해서 보장결정상에는 전자결재처리상태가 “발송” 상태임을 확인함

□ 조사·결정 > 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조사자결정

❖ 업무처리순서 : 발송상태 확인

❖ 처리방법

(1) 발송상태확인

① 발송상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처리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발송” 상태로 존재하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결정완료된 대상자가 연계(수신)되는 시점에 보장결정 처리가 완료됨



② 차상위경감연계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송수신 처리된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함

자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진행 상태 조회

성명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전송일자 이력 조회 조회

연계 상태 조회 변동정보 수신조회

요청일자	조사ID	성명	전송일시	수신일시	요청구분	행복6음					건강보험			
						질환구분	결재전	결재중	결재완료	송신	수신	질환구분	결재반영	결정일자
					중지요청				0	0	0		0	20171108
					책정요청				0	0	0		0	20120319

③ 차상위경감 변동정보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변동정보의 처리된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함

자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진행 상태 조회

성명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전송일자 이력 조회 조회

연계 상태 조회 변동정보 수신조회

수신일자	이름	수신일시	처리상태	변동사유	변동일자
			처리완료	책정	201 -18
			처리완료	책정	201 -18
			처리완료	책정	201 -01
			처리완료	만성질환자(종지)	201 -01
			처리완료	연형도려자(종지)	201 -01
			처리완료	책정	201 -11

④ 차상위경감완료

- 전자처리결재상태가 결재가 아닌데 송수신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차상위경감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차상위본인부담자격에 대해서만 결재완료를 처리함

※ 주의 : 결재종료 버튼을 클릭시 전체 가구원의 전자결재처리가 종료되므로 사용 주의

□ 조사·결정 > 결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진행현황

- 자격결정 송수신상태 조회 및 실시간 자격정보 확인(반송 건 조회 가능)

NO	관리행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정상태	결정일자	전송일시	수신일시	처리상태	결재일자	결재상태	반송사유	건강보험공단 자격정보 (심사일)
1			-2*****	중지	2017-12-21	2017-12-21	2017-12-21	처리완료	2017-12-21	결재완료		자격정보
2			-3*****	중지	2017-12-21	2017-12-21	2017-12-21	처리완료	2017-12-21	결재완료		자격정보
3			-3*****	중지	2017-12-21	2017-12-21	2017-12-21	처리완료	2017-12-21	결재완료		자격정보
4			-1*****	중지	2017-12-14			결재전				자격정보
5			-4*****	중지	2017-12-26	2017-12-23	2017-12-26	처리완료	2017-12-23	결재완료		자격정보
6			-3*****	중지	2017-12-26	2017-12-23	2017-12-26	처리완료	2017-12-23	결재완료		자격정보
7			-2*****	중지	2017-12-26	2017-12-23	2017-12-26	처리완료	2017-12-23	결재완료		자격정보
8			-2*****	제외	2017-12-26	2017-12-26	2017-12-26	처리완료	2017-12-26	결재완료		자격정보
9			-4*****	중지	2017-12-21	2017-12-19	2017-12-21	처리완료	2017-12-19	결재완료		자격정보
10			-3*****	제외	2017-12-21	2017-12-19	2017-12-21	처리완료	2017-12-19	결재완료		자격정보
11			-1*****	중지	2017-12-21	2017-12-18	2017-12-21	처리완료	2017-12-18	결재완료		자격정보
12			-2*****	중지	2017-12-14	2017-12-13	2017-12-14	처리완료	2017-12-13	결재완료		자격정보
13			-2*****	중지	2017-12-14	2017-12-13	2017-12-14	처리완료	2017-12-13	결재완료		자격정보
14			-2*****	중지	2017-12-22	2017-12-21	2017-12-22	처리완료	2017-12-21	결재완료		자격정보
15			-2*****	중지	2017-12-19	2017-12-18	2017-12-19	처리완료	2017-12-18	결재완료		자격정보
16			-1*****	중지	2017-12-19	2017-12-18	2017-12-19	처리완료	2017-12-18	결재완료		자격정보
17			-1*****	중지	2017-12-14	2017-12-13	2017-12-14	처리완료	2017-12-13	결재완료		자격정보



⑧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집계현황에서 재책정 또는 중지대상자로 변경 사항을 확인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인지할 일

변동집계현황

관리행정지역: [선택] | 보장구분: 전체 | 조회: [버튼]

변동일자: 2017- [월] - [일] | 미처리 조회기간: 최근 3개월 | 기간 선택: 2017- [월] - [일] | 검색 (Ctrl+F): [버튼]

수급자 | **부양의무자** | **조사가구원**

변동유형: 전체 | 갯있음 | 집계 | 미처리 | 처리

인지할 일

- 인적변동
- 전출입변동
- 소득재산변동
- 보장변동
- 기초연금현장조사
- 맞춤형급여수급자(책정)
- 맞춤형급여수급자(중지)
- 장애등급
- 장애보장(책정)
- 누리과정(중지)
- 장애보장(중지)
- 보장책정대상자
- 보장중지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중지) 28 | 0 | 28
- 차상위본인부담(재책정) 184 | 0 | 184
- 의료급여 상환
- 의료급여 위촉
- 이월급여특례 변경대상
- 아이를돌보던초과대상
- 최종 급여조사표상이자
- 아이를돌보던중장애판정
- 주거조사
- 대상자정보변동
- 상시조사

차상위본인부담(중지) 처리: 28건

관리행정지역	보장구분	변동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보장구분	중지사유	변동일자	직권처리여부
[]	최	최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이	이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김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이	이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김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강	임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1
[]	김	구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구	구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박	박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이	이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2
[]	김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10
[]	최	최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2
[]	박	박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2
[]	김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7
[]	최	최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14
[]	권	권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9
[]	강	강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1
[]	박	조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01
[]	최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8
[]	최	김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1
[]	민	민		차상위본인	만성질환자	20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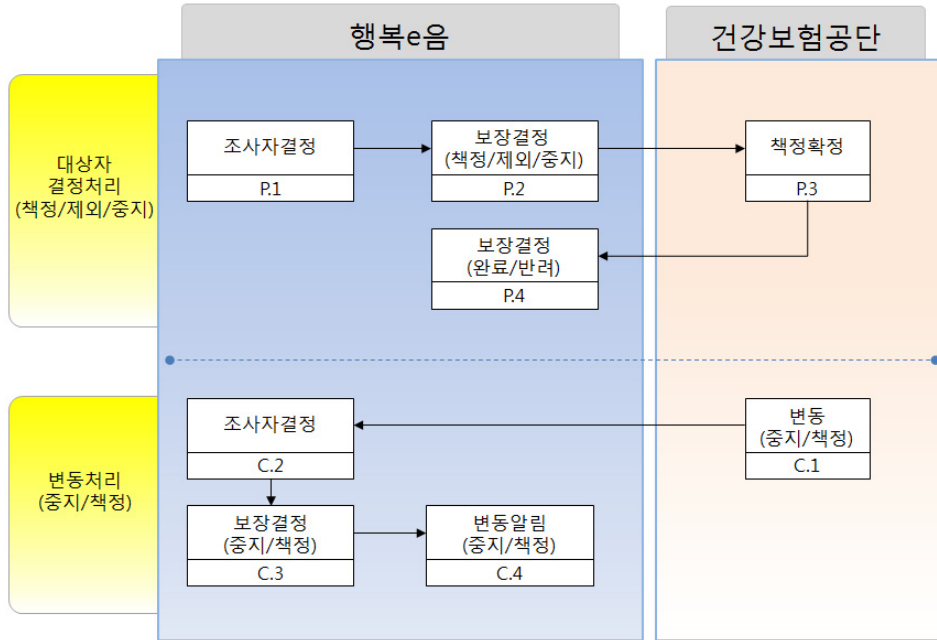
❖ 처리방법

① 조회

-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왼쪽의 변동대상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 보장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확인

⑨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그림】 상세처리 흐름 참조



처리구분	주요화면	내 용	비고
대상자결정 처리 (책정/제외/ 중지)	조사자결정(P.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조사자 책정요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	
	보장결정(P.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전자결재 발송 상태 확인	담당자 처리 불필요
	책정확정(P.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책정 완료 후 행복e음으로 자료를 제공함	
	보장결정(P.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전자결재 상태가 “결재” 상태로 변경되며 최종책정이 완료됨	담당자 처리 불필요
변동처리 (중지/책정)	변동(중지/책정)(C.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중지(책정) 요청정보를 행복e음으로 전송함	
	조사자결정(C.2)	● 조사자에 의한 중지(재책정) 요청을 수행	담당자 처리 불필요
	보장결정(C.3)	● 보장결정상에 최종 중지 또는 책정 완료상태 확인	담당자 처리 불필요
	변동알림(C.4)	● 차상위 본인부담(중지, 재책정) 변동알림 대상자로 조회가 가능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요청 및 출력함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신청 및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대상자 | 통계 | **상담·신청** | 조사결정 | 급여 | 변동사후 | 국토부 업무지원 | 자료정보 | 보육 |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발급 신청 및 현황

※ 신청 절차 : 신청자, 대상자 정보 입력 > 자격조회 > 저장 > 발급요청

① 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자 성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선택

대상자 성명: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② 자격조회** 신청일: 2017-12-27

확인 여부: ☐ 위임장 주민등록번호 표시유형: 123456-1***** 123456-1234567

발급종도: []

제출처: []

신청안내

⑤ 증명서발급현황 ③ 초기화 ④ 저장 취소 발급요청

※ "신청안내"를 클릭 하면 신청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저버와 특신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메시지가 나올 시 기존의 복사방식으로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현황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발급현황

관리행정동: 전체 신청일: 2017- ~ 2017- ⑥ 조회

처리상태: 전체 발급상태: 전체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⑦ 발급이력 ※ 증명서는 최초 1회만 인쇄가능합니다.

번호	신청인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상태	신청일자	발급상태	출력여부	발급일자	미발급사유
1	이	본인	이	-1*****	완료	201-26	발급	N		
2	이	본인	이	-1*****	완료	201-26	발급	N		
3	이	본인	이	-1*****	완료	201-26	발급	N		
4	정	본인	정	-2*****	완료	201-27	발급	Y	201-27	
5	김	본인	김	-3*****	완료	201-27	발급	Y	201-27	
6	김	본인	김	-2*****	완료	201-26	발급	N		
7	권	모	채	-3*****	완료	201-26	발급	Y	201-26	

처리상태안내

① [1] 전체: 7 건

엑셀다운로드 닫기

※ 신청일 조회기간은 한달단위로 가능합니다.
 ※ 색은 저장, 색은 실패·취소 처리된 항목입니다. 더블클릭하면 발급요청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순서

대상자 정보 입력 ⇨ 자격조회 ⇨ 저장 ⇨ 발급요청 ⇨ 발급현황 조회 ⇨ 출력

❖ 처리방법

(1)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자 및 대상자 인적정보 입력 및 대상자와의 관계, 위임장여부, 주민등록 번호 표시유형, 발급용도, 제출처 입력

② 자격조회

-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상태를 확인

③ 저장

- 증명서 발급 신청 상태를 저장

④ 발급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증명서 발급 요청

⑤ 증명서 발급현황조회

- 증명서 발급현황 화면을 팝업

⑥ 조회

- 대상자의 증명서 연계상태 및 발급 여부 조회

⑦ 미리보기 및 출력

-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후 출력